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번호	제 호(발급 시·도:)	
	취 득 일	년	월 일

실무경력	1. 관리사무소장 경력	년	개월
	2.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경력	년	개월
	3. 1과 2를 합산한 경력	년	개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수수료 없 음
------	---	------------

..... 간 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증

신청번호	성명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증은 주택관리사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한 때에는 사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및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 관리 실무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
4. 첨부서류 제2호가목의 재직·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2호가목의 재직·경력증명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방식을 적어야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근로소득증명원과 같은 호 다목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는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